

■ 국세기본법 제48조 [가산세 감면 등(2010.01.01 제목개정)]

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[2018.12.31 개정]

1. 제6조[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]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[2020.12.22 개정]
2.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[2018.12.31 개정]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[2018.12.31 개정]

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 [2010.12.27 개정]

1.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[수정신고]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

[제47조의3[과소신고 · 초과환급신고가산세(2011.12.31 제목개정)]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, **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**]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[2019.12.31 개정]

가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1개월 이내**에 수정신고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9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9.12.31 개정]

나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1개월 초과 3개월 이내**에 수정신고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75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9.12.31 개정]

다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3개월 초과 6개월 이내**에 수정신고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5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9.12.31 개정]

라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6개월 초과 1년 이내**에 수정신고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3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9.12.31 개정]

마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**에 수정신고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2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9.12.31 개정]

바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**에 수정신고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1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9.12.31 개정]

2.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[기한후 신고]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

[제47조의2[무신고가산세]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, **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**]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[2019.12.31 개정]

가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1개월 이내**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5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4.12.23 개정]

나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1개월 초과 3개월 이내**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3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9.12.31 신설]

다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**3개월 초과 6개월 이내**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: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2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9.12.31 개정]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**100분의 50**에 상당하는 금액 [2010.12.27 개정]

가. 제81조의15[**과세전적부심사**(2010.01.01 조번개정)]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·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[결정 ·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 [납부지연가산세(2018.12.31 제목개정)]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] [2011.12.31 개정]

나. **세법에 따른 제출, 신고, 가입, 등록, 개설**[이하 이 목에서 “제출등”이라 한다]의 **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** [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] [2010.12.27 개정]

다.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[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 [과소신고 · 초과환급신고가산세(2011.12.31 제목개정)]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, **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**] [2019.12.31 개정]

라.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**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** [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[무신고가산세]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, **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**] [2017.12.19 신설]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. [2010.01.01. 개정]